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년 11월 28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11월 5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1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지역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·시행(2019. 7. 9.)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,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. 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10조)
- 2)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,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. (안 제13조)
- 3) 토지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를 규정함.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의2, 제17조의2, 제38조의2, 제65조, 제6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,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1) [안 제3조, 제5조, 제10조]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절차 마련
- 2) [안 제13조]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
- 3) [안 제15조]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마련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,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,

동법 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고,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**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**

제10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
2.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

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3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) ①

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5조(상인회) ①

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
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
2.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
3.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

4.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
 5.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(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6.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 7.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
-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 -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
 2.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 3.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 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- 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

제68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

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2. 상인 및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3.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
 4.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